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금관리 공무원 명칭을 변경하여 기금업무의 효율성 및 내실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기금관리 공무원 명칭 변경(안 제7조의2 제2항)

○ 기금운용관을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에서 “장학기금 소관 부서장”으로, 기금출납원은 “복지기획담당”에서 “장학기금 소관 담당”으로 변경함.

나.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(안 제7조의3)

○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』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다. 기타사항

(1) 입법예고 : 2014. 11. 13. ~ 2014. 12. 2.(20일간)

(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
(3) 성별영향평가분석 : 해당없음.

5. 검토의견

❍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저소득층 자녀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기금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여 효율성 및 내실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

❍ 주요개정 내용은

기금운용관을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에서 “장학금 소관 부서장”으로, 기금 출납원은 “복지기획담당”에서 “장학기금 소관 담당”으로 변경하고,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는 내용이며, 우리군의 기금은 1992년 설치되었습니다.

❍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와 관련법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, 기금운용관 명칭 변경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자활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내용반영 및 기금(일몰제도)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금업무의 효율성 및 내실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개정에 따른 명칭변경

○ “자활공동체”를 “자활기업”으로 명칭변경

나. 보건복지부『자활사업지침』변경에 따른 내용반영

○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“7천만원”에서 “1억원”의 범위내로 확대함.(안제8조)

○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상환조건을 “5년거치후 5년내” 균등분할 상환조건에서 “1년거치후 4년내”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변경함.(안제8조)

다. 『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』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함.

○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함.(안제10조의2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』제26조의2, 『자활사업지침』, 『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』제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다. 기타사항

(1) 입법예고 : 2014. 11. 13. ~ 2014. 12. 2.(20일간)

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없음.

(3) 성별영향평가분석 : 해당사항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는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며, 창업 가능성이 높은 자활근로사업단 또는 자활기업 창업시 융자금을 대부하여 자활증진 기능을 지원하는 기금으로

○ 주요개정 내용으로
국민기초생활보호법 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

○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
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범위 확대, 자활기금 사업자금 대여 상환조건을 5년 거치 후 5년내를 1년 거치 후 4년내로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변경하고,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자활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관련법령 및 입법예고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제반 사항을 검토 결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